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원인 과학적 제시’

-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보고서」 발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안전대책을 담은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장에서 금속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와 동물성 사료첨가제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에폭시수지 제조업체에서의 사고 내용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원인분석과 시험장비에 의한 분석으로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184종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인화점, 녹는점, 증기압 등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해당 물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은 총 4권의 단행본 형태로 사고원인 추정, 원인규명 실험,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단 연구원은 2006년부터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과 관련 전문가의 사고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 (<http://oshri.kosha.or.kr>) 초기화면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에서 기존 보고서와 함께 화학물질별 위험성 및 안전성 평가 자료를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화재폭발 분야의 20개 항목에 대해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증받아 화학시험분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직업병의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한다

- 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3월 16일(금)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 개최

직업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정밀조사하는 역학조사를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담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월중 관련 규정을 제·개정한 후 4월 중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역학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연구원에서만 수행하다보니 조사가 지연되고 판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원인규명이 어려운 직업병 등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역학조사는 '92년부터 실시되다가 '97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법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이며 질병이 사업장의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직무로 인한 것인지를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에서 조사 결과를 제공하면 산재판정기관(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지역 민간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하면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검진 등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수월해져 신속한 판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역학조사에 참여하면 진단 역량이 향상되어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사 결과가 기관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치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는 현재에도 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은 관련분야 학회장 등 전문가로 구성

역학조사 기관은 현재 작업환경측정과 시료 분석이 가능한 대학병원(직업환경의학 외래가 개설된 곳. 현재 전국 20여개) 중 참여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한편, 연구원은 오랫동안 축적된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기관이 역학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Hub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민간에서 하기 힘든 신종직업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현재처럼 연구원이 수행하되, 특정 직업병에 대한 코호트 조사나 집단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하면서 공공과 민간기관 간의 역할을 분담해 나갈 예정이다.

산재근로자 치료에서 직업 복귀까지 O.K! 대구에 재활전문병원 문연다

- 8개 전문클리닉과 4개 재활전문센터 설치

4월5일(목) 개원하는 대구산재병원은 기존의 9개의 산재병원과 달리 ‘재활’을 특화시킨 전문 병원으로, 재활전문진료센터에 전문클리닉8개 *를 두었다.

※ 척추 및 뇌(중추신경)손상, 욕창·화상, 마취통증, 근골격계, 심장, 심리 등

또한 재활전문치료센터에는 심리·언어·작업·레크레이션·스포츠재활 치료실과 재활보조기를 직접 제작·공급하면서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보장구센터가 마련돼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을 연계하는 「직업·사회재활센터」를 설치해 산재근로자의 작업 및 사회복귀,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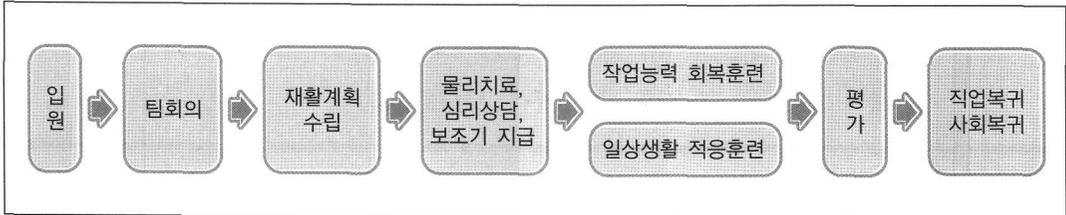
대구산재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한다.

환자가 입원하면 의료진과 치료사가 팀회의를 열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재활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치료를 한다. 재해를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환자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절단 및 마비환자에게는 재활보조기를 지급해 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자의 작업능력 회복 및 일상생활적응 훈련도 병행해 직업이나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산재병원 재활치료 과정〉



이와함께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지사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요양관련 승인 및 보험급여 지급, 재활서비스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간호사와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면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개인간병인의 경우, 휴게나 휴가 등으로 꾸준한 간병이 어렵고 간병료 외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전문성의 결여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

재활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으로 연결시켜주는 가교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이번에 재활전문병원으로 개원하는 대구산재병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령인력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 고용부, 28일(수) 「제1차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 개최
-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 논의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수) 오전 7시30분, 매리어트호텔(서초구 반포동)에서 「제1차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령인력 고용정책을 연구해 온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최강식 교수(연세대)는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인력 공급을 늘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의 과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인력 활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고령인력이 나이와 관계없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더 오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장관은 “고령사회 해법의 첫 단추는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 이라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고 혜택을 나누는 임금피크제 처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말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폭 넓게 짚어보고 논의 결과를 고령사회인력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 향후 논의 주제(예시)〉

- ①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② 중고령자 취업 구조와 고용정책 방향
- ③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고령자 고용연장에 미치는 효과
- ④ 고령자 고용연장 관련 정부지원금제도 활성화 방안
- ⑤ 기업의 전직지원 강화 및 공공·민간의 고령자 재취업촉진 인프라(on-off) 확충 방안
- ⑥ 기업의 중·고령자 HRD-HRM 강화 방안
- ⑦ 연령차별금지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내실화 방안
- ⑧ 사회보험(고용보험, 퇴직금제 등)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연계 방안
- ⑨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세제지원 방안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정착, 우리가 책임진다

-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중소제조업체 밀집 공단지역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집중 조사 -

고용노동부 이채필장관과 박영범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3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서포터즈는 작년 8월 19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업종에 대해 4개월에 걸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발표('11. 12. 23)했다.



산업보건 주요뉴스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① (고용안정)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 조건 유지 노력
- ② (근로조건 개선) 하청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노력
-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④ (복리후생)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신속한 고충처리

그러나, 작년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조사하지 못한 철강·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500여 개소)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이나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올해 7월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 근로개선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안전시설 불량한 건설현장 적발되면 바로 사법처리

-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338곳 사법처리 -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월)부터 3월 20일(화)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했고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감독 실시 현장의 48.4%)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B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팰리스 신축공사(충남 소재)」등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8곳에 대해서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C공영(주) 「○○지구 아파트현장」등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2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료 6억 183만원을 부과하고, 2,308건은 시정을 병행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사법처리 비율(3.8%)에 비해 무려 13배 높아진 것으로,

- 기존에는 사업장 점검시 추락·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단위 : 개소)

연도	사업구분	감독 현장수	위반 현장수	사법처리 (입건)	과태료		작업중지		시정조치 (건)
					개소	부과액	전면	부분	
2012년	감독	699	655 (93.7%)	338 (48.4%)	418 (59.8%)	6억 183만원	8	112	2,308
2011년	점검	793	766 (96.6%)	30 (3.8%)	259 (32.7%)	3억 8천만원	12	118	2,748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감독 비중을 대형 건설현장보다 중·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했는데, 그런 관행들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나중에 개선하면 된다는 인식이 사업주들 사이에 팽배한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구속

-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주) 울산공장 공장장 박모씨
- 폭발·화재사고(근로자 3명 사망, 4명 부상) 책임 물어

울산지검(지검장 조영근)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안전조치 소홀로 폭발·화재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근로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주) 울산공장 박모 상무(56세)를 4월 3일 17:30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박모씨는 울산 남구 부곡동에서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화학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조공정의 기본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1. 8. 17. 공장 내에서 작업 중 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고는 화학반응기에서 발생하는 유증기(油蒸氣)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공장 내부로 유출된 유증기가 탱크로리 등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지역 등에서 화재·폭발에 의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속된 박모씨의 경우 화학공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위 공장장을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지검은 같은 공장 생산팀장 지모 상무부와 이모 반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로 같은 날 구속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위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